

사회복지법인 유은(唯恩)복지재단
2019년도 정기이사회 의록

- * 일 시 : 2019년 01월 25일 (금요일) 13:40
- * 장 소 : 유은복지재단 문화관 회의실 (경북 안동시 남선면 지골길 18)
- * 임원총수 : 이사 7명, 감사 2명
- * 참석임원 : 이종만 대표이사, 박종공 이사, 임성진 이사, 장국환 이사,
김윤애 이사.
- * 불참임원 : 장석준 이사, 고유나 이사, 권헌서 감사, 이윤수 감사.

I 부 예 배

- * 일 시 : 2019년 01월 25일 (금요일) 13:40 ~ 13:55
- * 인 도 : 이종만 목사
- * 찬송가 212장을 다 같이 부른 후, 장국환 이사로 기도케 하다.
- * 임성진 목사가 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봉독하고 ‘하늘나라에
서 큰 사람’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한 후, 기도에 이어 축도로 예배를 마친다.

II 부 회 의

- * 일 시 : 2019년 01월 25일 (금요일) 13:55 ~ 15:00
- * 사 회 : 이종만 대표이사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권남규 사무국장이 재적이사 총 7명 중 5명 출석, 2명 불참을 보고하자 정관 제26조(이사회 의 개의와 의결정족수)에 의거 개회 정족수가 됨에 따라 의장인 이종만 대표이사가 인사 말씀을 한 후, 사회복지법인 유은복지재단(이하 ‘본 재단’이라 한다) 2019년도 정기이사회 의 개회를 선언하다.

2. 전회의록 낭독 : 이종만 의장이 권남규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2018년도 11월 30일 채택 된 2018년도 2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낭독하게 하다.

3. 경과보고 : 권남규 사무국장이 2018년도 2차 임시이사회 이후 본 재단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눔공동체(이하 '본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별첨자료 1, 1-1]의 서면 및 구두로 경과를 보고하다.

4. 안건상정 : 이종만 의장이 본 재단 및 본 시설의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자 박종공 이사의 동의와 임성진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임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상정할 것을 의결하다.

제 1호 : 2018년도 법인 및 시설의 업무·회계 감사보고 심의·의결의 건

제 2호 : 2018년도 법인회계 및 시설일반회계(수입사업, 시도보조금, 후원금) 결산(안) 심의·의결의 건

제 3호 : 2019년도 법인회계 및 시설일반회계(수익사업, 시도보조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제 4호 : 기본재산 처분(임대·위탁)에 관한 심의·의결의 건

제 5호 : 보통재산 불용처분 심의·의결의 건

제 6호 : 나눔공동체 시설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개정(안) 심의·의결의 건

제 7호 : 기타 안건 심의·의결의 건

5. 심의·의결사항

1) 안건 제 1호 : 2018년도 법인 및 시설의 업무·회계 감사보고 심의·의결의 건

이종만 의장이 상정하여 미리 나누어 준 [별첨자료 2]의 2018년 법인 및 시설의 업무·회계 감사보고에 대하여 권남규 사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이를 개별적으로 검토케 하고 심의한 결과, 별첨 원안대로 받기로 박종공 이사의 동의와 임성진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임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

2) 안건 제 2호 : 2018년도 법인회계 및 시설일반회계(수익사업, 시도보조금, 후원금) 결산(안) 심의·의결의 건

이종만 의장이 상정하여 미리 나누어 준 [별첨자료 3, 3-1, 3-2, 3-3]의

2018년 법인회계 결산 및 시설일반회계(수익사업, 시도보조금, 후원금) 결산(안)에 대하여 권남규 사무국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이를 개별적으로 검토케 하고 심의한 결과, 별첨 원안대로 받기로 임성진 이사의 동의와 장국환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임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

3) 안건 제 3호 : 2019년도 법인회계 및 시설일반회계(수익사업, 시도보조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의결의 건

이종만 의장이 상정하여 미리 나누어 준 [별첨자료 4, 4-1, 4-2]의 2019년 법인회계 및 시설일반회계(수익사업, 시도보조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권남규 사무국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이를 개별적으로 검토케 하고 심의한 결과, 별첨 원안대로 받기로 박종공 이사의 동의와 장국환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임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

4) 안건 제 4호 : 기본재산 처분(임대·위탁)에 관한 심의 · 의결의 건

이종만 의장이 상정하여 미리 나누어 준 [별첨자료 5]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해 최저임금인상(2018년 16.4%, 2019년 10.9%)과 원·부자재 인상 등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2018년 1차 임시이사회에서 기본재산(비닐하우스·가설건축물)을 처분(철거)하는 것으로 의결된 바, 철거비용이 과다하여 철거가 아닌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에 임대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권남규 사무국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이를 개별적으로 검토케 하고 심의한 결과, 별첨 원안대로 받기로 임성진 이사의 동의와 장국환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임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

5) 안건 제 5호 : 보통재산 불용처분 심의 · 의결의 건

이종만 의장이 상정하여 미리 나누어 준 [별첨자료 6]의 보통재산 불용처분에 대하여 권남규 사무국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이를 개별적으로 검토케 하고 심의한 결과, 별첨 원안대로 받기로 임성진 이사의 동의와 박종공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임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

6) 안건 제 6호 : 나눔공동체 시설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개정(안) 심의 · 의결의 건
이종만 의장이 상정하여 미리 나누어 준 [별첨자료 7, 7-1]의 본 시설의
시설운영규정 및 취업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권남규 사무국장으로부터 상
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이를 개별적으로 검토케 하고 심의한 결과, 별첨 원안대
로 받기로 박종공 이사의 동의와 장국환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임원 전원이 이
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

6. 회의록채택 : 이상으로 심의 · 의결된 안건들의 정확무오성을 입증하기 위
하여 이종만 의장이 작성된 회의록을 권남규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낭독케 하
니, 수정 보완할 것이 없으므로 그대로 채택할 것을, 박종공 이사의 동의와 김
윤애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임원 전원이 의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

7. 폐회선언 : 이상으로 모든 안건이 원만히 심의 · 의결되었으므로 폐회할 것
을 임성진 이사의 동의와 장국환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임원 전원이 의의가 없
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이종만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 기록자 : 사무국장 권 남 규 (인)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19년 01월 25일

사회복지법인 유은(唯恩)복지재단

대표이사	이	종	판	이	사	박	종	공
이	사	임	성	진	이	사	장	국
이	사	김	윤	애				